

「구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구미시 관리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유수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안 제2조, 별표)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합 의: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 합의되었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2. 3. 1.)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의 규정을 위해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 검토 결과,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용자 간 요금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별표 제1호나목1)과 제8호2)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 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

2) 8. 준설토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점용·사용(「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